

學 界 回 顧

李 均 成*

I. 學會動向

本學會에서는 創立時부터 다짐하였던 보다 적극적인 學會活動을 전개하기 위하여 新年初에 1980年度의 事業計劃을 수립하였다. 적극적인 學會活動을 위하여 불가결한 事業基金의 확보를 위해 會長을 비롯한 常任理事陣이 노력한 결과, 文教部의 1980年度 政策課題研究助成費 및 學會誌發刊補助費를 수령하게 되었다.

1980年度는 여러 가지 어려운 國內事情으로 인하여 例年에 비하여 보다 積極的으로 學會活動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로 1980年度에 이룩한 學會活動을 간추려 보면,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學會誌인 「環境法研究」第2卷의 發刊, '80年度定期 심포지움의 開催, 學會基金의 助成이 그 주된 것이 된다. 그리고 事業計劃의 樹立 및 推進을 위한 다섯 차례의 常任理事會가 있었다.

(1)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推進

本學會는 韓國環境法學의 發展 및 環境行政의 確立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해마다 重點의in 研究分野를 달리해 왔다. 1980年度에는 「環境規制手段의 比較法的研究」를 그 主題로 확정하여 文教部 政策課題研究助成費를 受領하였다. 이 主題下에 다음과 같은 小課題로 나누어 그 研究擔當者를 선정하였다.

- ① 環境規制行政(李尙圭)
- ② 環境基準의 比較法의 考察(許慶)
- ③ 環境污染과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考察(梁承斗)
- ④ 噴煙規制의 法理(金元主)

* 韓國外國語大 法大教授

- ⑤ 環境汚染에 대한 行政的 規制(朴秀赫)
- ⑥ 環境訴訟에 있어서 訴訟救助(金洪奎)

(2) 學會誌의 發刊

1979 年度의 本 學會 研究事業의 結果를 수록한 本 學會의 學會誌 「環境法研究」第 2 卷이 1980 年 5 月 10 日字로 出刊되었다. 그 内容은 다음과 같다.

- ① 環境行政訴訟의 諸問題(徐元宇)
- ② 公害訴訟의 節次的 課題(吳錫洛)
- ③ 環境紛爭調停制度의 效率化(權龍雨)
- ④ 公害의 被害者救濟와 保險(李均成)
- ⑤ 環境汚染被害救濟制度의 確立(具然昌)
- ⑥ 環境行政機構의 組織原則(權泰俊)
- ⑦ 判例評釋: 私生活의 隱密性侵害을 理由로 建築工事의 一部中止를 命한 事例(全昌祚)
- ⑧ 資料: 環境保全法(1979年改正法)
- ⑨ 學界回顧(具然昌)

環境法研究 第 2 卷은 本 學會의 學會誌頒布方針에 따라 全會員, 各大學校 中央圖書館, 環境關係 機關 및 專門家에게 配布하였으며, 一般人の 購讀을 위하여 서울特別市 鍾路 1 街 所在의 鍾路書館과 光化門 所在 中央圖書展示館에 비치해 두고 있다.

(3) 1980 年度 定期 심포지움의 開催

1980 年度에는 國內事情으로 인하여 研究發表會를 전혀 가지지 못하였고, 다만 定期심포지움이 몇 번이나 延期되다가 12 月 17 日에야 겨우 開催할 수 있었다. 1980 年度의 本 學會 단 한번의 모임이었으나, 많은 會員이 참석하여 7 시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열띤 討論을 한 점은 특기할만 했다. 그리고 朴準翼環境廳長을 비롯하여 많은 環境廳의 關係 公務員과 專門家들이 참석하여 깊은 關心을 보여 주었다.

1980 年度 定期 심포지움의 進行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日時 : 1980 年 12 월 17 일 (水) 오전 10 시 ~ 오후 5 시 30 분
- ② 場所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세미나室.
- ③ 主題 : 環境污染과 環境規制.
- ④ 參석자 : 本 學會 會員教授 · 公務員 등 34 인
- ⑤ 심포지움 進行 프로그램 :
 - (가) 開會辭 (李尚圭會長)
 - (나) 祝辭 (朴準翼環境廳長)
 - (다) 第 1 部 (司會 : 金燦圭)
 - (i) 環境規制行政 (李尚圭)
 - (ii) 喫煙規制의 法理 (金元主)
 - (iii) 環境基準 (許慶)
 - (라) 第 2 部 (司會 : 金鍾源)
 - (i) 環境權 (金哲洙)
 - (ii) 土地利用規制 (梁承斗)
 - (iii) 環境訴訟과 訴訟救助 (金洪奎)

(4) 學會基金의 助成

學會活動의 적극화 내지 활성화는 學會基金의 確保如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우리 나라 學會의 괴할 수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本 學會는 創立當初부터 다짐했던 學會活動의 組織化 · 積極化 · 活性化를 기하기 위하여 그前提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學會活動을 위한 基金助成에 특히 腹心해 왔다. 學會創立 이래 學會의 經濟的 運營原則, 그리고 研究擔當會員들의 篤志에 힘입어 學會基金 積立에 牀車를 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短期間內의 基金積立은 創立 당초부터 열성적인 努力を 傾注해 온 李尚圭會長에게 그 공로를 돌려야 할 것 같다.

(5) 會員數의 倍增

學會創立 이래 環境法分野에 진지하고도 열렬한 關心을 가지고 研究를

하고 있는 大學教授, 法曹人, 公務員, 環境專門家들만이 會員으로 加入해 왔기 때문에, 本學會의 會員增加는 다른 學會에 비해 볼 때 비교적 低調한 편이었다. 그러나 創立 이후 3년을 지나면서 처음 會員數의 두 배가 되는 60名線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그간 요람기를 벗어나지 못했었던 우리 나라 環境法學이 그만큼 成長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6) 會員의 海外研究活發

다른 해에 비하여 1980年에는 會員들의 海外滯在·研究가 부쩍 늘었다고 할 수 있다. 短期的인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1年이상을 예정한 會員들이 적지 않다. 徐敏교수가 2月初 2년 계획으로 獨逸로, 金南辰교수가 8月 1년 계획으로 Freiburg 大學으로, 朴秀赫교수가 2년 계획으로 Bochum 大學으로, 徐元宇교수가 1년 계획으로 12月初 Stanford 大學으로, 環境廳의 李京浩書記官이 2년 계획으로 12月末 Montana 大學으로, 그리고 1981년 1月初 具然昌교수가 2년 계획으로 Wisconsin 州立大學 각각 떠났다. 이들의 長期間의 海外研究가 本 學會의 研究事業은 물론 우리나라 環境法學의 發展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7) 常任理事會의 開催

- ① 1980年 2月 14日
- ② 1980年 6月 9日
- ③ 1980年 7月 16日
- ④ 1980年 8月 23日
- ⑤ 1980年 11月 13日

II. 法制 등 整備

1980年은, 環境行政專擔의 部署로서 環境廳이 新設되어 活動을 시작하였고, 특히 第5共和國憲法中에 環境權이 明文化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라 環境法 내지 環境行政의 歷史에 있어 획기적인 한 해가 아닐 수 없다. 그외에도 環境關係法規가 보다 擴充되었고, 環境保全行政에 있어 어렵고도 중요한 것의 하나인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施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 環境權의 立法化

그동안 環境權의 立法化가 적잖이 論議되어 왔었으나 憲法的 受容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10·26 事態 이후 憲法改正의 論議가 활발하게 展開되면서 環境權의 憲法的 受容이 各界로부터 주장되어 왔었다.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의 의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環境權의 明文化를 보류하자는 慎重論이 있었지만, 결국 80年代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環境問題에 대한 國民的 내지는 國家的 意志의 表現으로서 環境權을 憲法中에 明文化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第5共和國憲法 제33조에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한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環境權을 基本的 人權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의 環境保全義務 그리고 國民의 環境保全義務까지 明文化하고 있다.

環境權 내지 環境保全義務의 憲法的 受容은 國家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은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 70년 이후에 憲法改正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國家는 거의 예외없이 이를 明文化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立法趨勢에 비추어 보니, 지금까지 너무나 소홀히 취급해 왔던 環境問題에 대한 앞으로의 態度轉換을 도모하려는 意志의 表現으로서 보더라도, 우리 憲法의 環境權 및 環境保全義務의 明文化는 지극히 쳐질하고도 마땅한 하나의 快舉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憲法에서 環境權을 定義함에 있어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라고 한 점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다. 차라리 「보다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을 享有할 權利」라고 定義했으면 더 나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깨끗한 環境」이란 清掃가 잘된 環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역시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다.

(2) 法令의 整備·擴充

1979년 12월 28일자로 環境保全法이 改正·公布되었으나, 그 下位法令인 施行令·施行規則의 改正이 늦추어지다가, 施行令이 1980년 8월 6일 大統領令 제9989호, 그리고 施行規則은 1981년 1월 7일 保健社會部令 제664호로 각각 改正·公布되었다.

改正된 施行令 및 施行規則은 舊法令의 근간을 그대로 둔 채, 汚染物質, 特定有害物質 및 排出施設의 종류를 增大시켰고, 排出許容基準을 다소 強化하였으며, 특히 防止施設業·產業廢棄物處理業의 資格基準을 強化하고 그 監督·規制를 대폭 강화시키고 있는 점이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79년 12월 28일 法律 제3210호로 改正·公布된 汚物清掃法은 그 主管部處를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環境廳長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環境廳의 新設과 함께 環境廳의 主管業務와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지는 法이 環境保全法과 汚物清掃法으로 되었다.

또한 廢棄物 중 資源 및 環境問題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合成樹脂廢棄物의 收集·處理, 나아가 廢棄된 資源의 再活用을 통하여 自然環境의 保全에 기여케 할目的으로, 1979년 12월 28일 法律 제3182호로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法에서는 合成樹脂廢棄物의 收集·處理·再活用을 위하여 韓國資源再生公社를 設立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 施行令은 1980년 8월 26일 大統領令 제1001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3) 環境廳의 活動開始

1980년 1월 15일 현관식을 가진 環境廳은 開廳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人的要員과 關係資料의 確保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消極的인 政策을 펴왔던 政府가 人的要員의 養成에 힘쓸 수 없었기 때문에 環境廳職制에 의한 1室·3局·20課를 關係專門要員으로 擴充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環境廳은 關係部處, 研究所 등에

서 專門要員의 誘致에 노력하는 한편, 우리 나라 環境行政의 座標가 肅長·短期 環境保全計劃의 作成을 위한 準備作業에 착수하였다.

環境行政에 있어 가장 基本이라고 할 수 있는 全國的 規模의 汚染實態의 基礎調查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나라 環境行政의 現住所인 것이다. 따라서 環境廳은 이 점을 인정하고 80 年度를 基礎調查에 集中하는 해로 정하고 그 作業에 착수하였다. 특히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ADB 借款을 도입하여 우선 한강유역을 1981년 6월부터 調查하게 되었다. 그리고 環境污染의 體系의이고도 계속적인 測定·management를 기하기 위하여 서울·釜山·大邱·光州·大田·春川에 環境測定管理事務所를 설치하였다.

다른 한편, 環境對策의 積極의이고도 綜合的인 推進을 위한 立法整備作業에 착수하여, 이미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費用負擔 및 被害補償에 관한 立法補完을 위한 調査·研究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特記할만한 것은 그동안 宿題로 되어 있었던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施를 具體化하기 위하여 1981年 2月 28日 「環境影響評價書作成에 관한 規程案」全文 10個條 別表 1을 작성하여 관계전문가들의 意見을 수집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集中的인 檢討·分析을 한 결과, 1981年 2月 28日 이 規程案은 環境廳 告示 第81-4號로 公布되었다. 오늘날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施는 一國의 環境行政을 평가하는 하나의 尺度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 크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經濟的·社會的·政治的 實情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完全無缺한 環境影響評價制度의 實施를 도모함은 다소 難關에 부딪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制限的으로나마 環境影響評價制度를 실시토록 그 적극적인 推進이 要望된다고 하겠다.

III. 研究活動

1980년의 環境法關係의 研究活動은 本 學會의 것 이외에도, 서울大 法學研究所의 「環境과 法」에 관한 學術會議가 注目할만 했다. 그리고 法務部

가 그 論說集 第4輯을 環境問題 内지 環境法에 관한 特輯號로 출간한 것
이 있다.

(1) 세미나

A) 서울大 法學研究所 主催「環境과 法」學術會議

가) 日時 : 1980년 10월 18일~19일

나) 場所 : 서울大 教授會館

다) 초청연사 :

① Prof. M.B. Pescod, O.B.E., Univ. of New Castle, England: "The Law Related to Pollution Control in the United Kingdom"

② 西原道雄立牛, 日本 神戶大學: "Remedies for Environmental Damages in Japanese Laws"

라) 主題 :

① 環境權의 生態學的 接近(韓相範)

② 環境公害에 대한 法的 規制(徐元宇)

③ 環境污染의 私法的 救濟(具然昌)

④ 環境公害의 國際法的 接近(盧明俊)

B) 本 學會의 「環境污染과 環境規制」 심포지움

가) 日時 : 1980년 12월 17일

나) 場所 : 延世大 行政大學院 세미나室

다) 主題 : (上述)

(2) 環境法關係 論文

① 具然昌, 「改正된 環境保全法의 檢討·批判」, 司法行政 1980년 1월 호.

② 具然昌, 「環境權·環境保全義務의 立法提案」, 司法行政 1980년 3월 호.

③ 徐元宇, 「環境行政訴訟의 諸問題」, 環境法研究 第2卷(1980.5).

④ 吳錫洛, 「公害訴訟의 節次的 課題」, 環境法研究 第2卷.

- ⑤ 權龍雨·「環境紛爭調停制度의 效率化」, 環境法研究 第 2 卷.
- ⑥ 李均成·「公害의 被害者救濟와 保險」, 環境法研究 第 2 卷.
- ⑦ 具然昌·「環境污染被害救濟制度의 確立」, 環境法研究 第 2 卷.
- ⑧ 權泰俊·「環境行政機構의 組織原則」, 環境法研究 第 2 卷.
- ⑨ 全昌祚·「判例評釋: 私生活의 隱密性侵害을 理由로 建築工事의 一部 中止를 命한 事例」, 環境法研究 第 2 卷.
- ⑩ 具然昌·「韓國 環境法의 過去·現在·未來」, 論文集(慶熙大 大學院) 第 7 輯(1980.5).
- ⑪ 盧隆熙·「環境保全의 必要性」, 論說集(法務部 法務諮詢委員會), 第 4 輯(1980.7).
- ⑫ 盧在植·「大氣污染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및 그 對策」,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⑬ 權肅杓·「水質污染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및 그 對策」,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⑭ 鄭文植·「固體廢棄物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및 그 對策」,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⑮ 金政炫·「環境污染에 대한 行政的 規制方法과 環境政策의 轉換方向」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⑯ 金鍾源·「公害事件에 대한 刑事的 制裁」, 法務部 論語集 제 4 집.
- ⑰ 鄭萬朝·「美國의 環境法과 環境訴訟」,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⑱ 吳錫洛·「公害의 私法的 救濟」,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⑲ 李載厚·「美國의 集團訴訟과 市民訴訟」,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⑳ 徐元宇·「環境影響評價制度의 問題點」,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㉑ 具然昌·「環境保全에 관한 外國立法例와 우리 나라 環境保全法의 問題點」, 法務部 論說集 제 4 집.
- ㉒ 具然昌·「人口問題에의 法的接近」, 法曹 제 29권 7호 및 8호(1980.7. 8).
- ㉓ 吳載勲·「公害와 違法性에 관한 研究」 慶熙大 大學院碩士學位論文(1980).